

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3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1월 00일

발의자 : 박선미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경관법」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에 ‘교량,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’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남시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.
- 나. 「경관법 시행령」 개정(2023. 5. 2. 시행)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공청회 개최 시 시·도지사등이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 삭제
- 다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경관계획의 내용에 교량, 송전탑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제3호의2)
나. 공청회 주재자의 지명 또는 위촉 사항 삭제(안 제7조제1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“경관사업자”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장,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”를 ““경관사업자”란”으로, “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”를 “사업계획서 심의·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하며, 우리”를 “하며,”로, “시민”을 “하남시민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관련계획”을 “관련 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령에”를 “법령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로 하여금”을 “자에게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한”을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교량,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)”을 “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관사업추진협의체”를 “경관사업추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관사업추진협의체”

를 “협의회”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관사업추진협의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경관사업추진협의회의”를 “협회의”로, “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”을 “협회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,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“경관사업추진협의회”를 각각 “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“경관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”을 “협회의 운영”으로, “경관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”을 “협회의 의결”로 한다.

6.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
제12조의 제목 “(경관사업추진협의회의 기능)”을 “(협회의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관사업추진협의회”를 “협회”로 한다.

제15조제1호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호 중 “「도로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 등”을 “「도로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 등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제1호 중 “의한 중점관리구역”을 “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3조제5항”을 “영 제23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진흥 위원회를 말한다.”를 “진흥위원회를 말한다”로 하

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”를 “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“경관사업자”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장,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6. (생 략)</p> <p>제3조(경관관리의 기본방향)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<u>하며, 우리</u> 시의 자연·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<u>시민의</u>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) ①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“경관사업자”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계획서 심의·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경관관리의 기본방향) --- ----- ----- ----- --- <u>하며,</u> ----- ----- <u>하남시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

4.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

- 5. 6. (생략)

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료 하에 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6조(경관계획의 내용) 법 제9조 제1항제11호에 의한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- 1. ~ 3. (생략)

<신 설>

- 4. ~ 6. (생략)

제7조(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)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

② -----
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 관련 계획-----

4. --- 법령과-----

- 5. 6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자
에게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경관계획의 내용) -----
----- 따라 ---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교량,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

- 4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) <삭 제>

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1. 해당 경관계획과 직접 관련된 사람

2.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

3.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

② ~ ④ (생략)

제11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)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지방의회 의원

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) ① -----
경관사업추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-----

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
② 협의체-----

-----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

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,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(생략)

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.

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

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협의체-----

-----.

④ ----- 협의체의 -----
----- 협의체를 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협의체-----

-----.

⑦ 협의체-----
-----.

⑧ ----- 협의체-----

-----.

⑨ ----- 협의체의 운영 -----
----- 협
의체의 의결-----

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) 영 제9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~ 5. (생략)

제15조(경관협정의 내용) 영 제11조제3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

2. ~ 4. (생략)

제22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)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「도로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 등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)

2. (생략)

-----.

제12조(협의체의 기능) -----
----- 협의체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경관협정의 내용) -----

-----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) -----

-----.

1. 「도로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 등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

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4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28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)

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”란 「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말한다..

②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

제23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

① -----

-----.

1. -----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① 영 제23조제6항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)

① -----

----- 진흥위원회를
말한다.

② -----

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
의 기능을 대행하며, 이 조
례에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
하남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
관한 사항으로 본다.

----- 진흥위원
회에 관한 사항으로 -----
-----.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경관법

제9조(경관계획의 내용)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, 행정시장,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
2.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
4.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(이하 “중점경관관리구역”이라 한다)의 관리에 관한 사항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(이하 “경관지구”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6.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7.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
9. 자연 경관,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, 가로(街路),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
10.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□ 경관법 시행령

제5조(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)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)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

가. 공청회 개최목적

나.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

다.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

라.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

2.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